

결 정 서

□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

□ 처분청 ▼▼▼

주 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에게 □□□시 □□읍 □□리 □□□외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가세 포함) ◇◇◇,◇◇◇원을 과세하였음.

2. 신청의 취지 및 요지

가. 신청취지

이 사건 처분의 경정을 구함.

나. 신청이유

신청법인은 재산세 부과(중과세) 근거가 된 지방세 법령의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하고, 그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취소할 것을 주장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다 탐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신청법인 등이 소유한 골프장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 토지분 재산세(부가세 포함)를 신청법인에게 ◇◇◇,◇◇◇원을 과세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

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라. 판 단

신청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 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이의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 되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4. 결 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4.

남 양 주 시 장